

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에 따른 노동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- 10.6.(금) 한겨레신문(인터넷), “임금체불 1인 시위’ 분신 택시 노동자 열흘 만에 끝내 사망” 기사 등 관련

-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열흘만인 6일 끝내 사망했다.
- 앞서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영됐으며,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(서울남부지청)는 10.4.부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하여 현재,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에 있음
-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,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및 사법조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최충운 (044-202-7528)